

무배당 Chubb 든든한 치아안심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- 1. 보험의 종류 : 장기손해보험 / 장기기타보험
- 2. 보험종목의 명칭 : 무배당 Chubb 든든한 치아안심보험
- 3. 보험의 목적
 - 피보험자의 신체
- 4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구분	보험기간	가입나이	납입기간	납입주기
[기본계약] · 치아치료보장(치아관련 13개 담보 보장) 및 만기환급금 · 치아치료보장(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) · 치아치료보장(골드인레이/골드온레이 충전치료) · 치아치료보장(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)	10년만기	11~70세	전기납	월납 연납
[선택특약] · New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	10년만기	30~70세		

주)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
5. 기본계약(치아치료보장(치아관련 13개 담보 보장) 및 만기환급금)의 보상금액

구분	보상금액(단위: 원)	
	1형 (만기환급금 60만원)	2형 (만기환급금 100만원)
① 치아치료(치아미백제외)를 위한 종합구강검진(연간 1회에 한함)	3,500	좌동
② 치아치료(치아미백제외)를 위한 치석제거(스케일링)(연간 1회에 한함)	10,000	좌동
③ 아말감 충전(치아당 보상)	7,500	좌동
④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(치아당 보상)	7,500	좌동
⑤ 단순 발치(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)(치아당 보상)	7,000	좌동
⑥ 정교한 발치(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)(치아당 보상)	9,000	좌동
⑦ 매복된 치아의 발치(치아당 보상)	21,000	좌동
⑧ 엑스레이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(촬영당 보상)	4,500	좌동
⑨ 파노라마 사진(촬영당 보상)	6,500	좌동
⑩ 1개 근관/엑스레이 포함(치아당 보상)	10,500	좌동
⑪ 2개 근관/엑스레이 포함(치아당 보상)	16,000	좌동
⑫ 3개 근관/엑스레이 포함(치아당 보상)	22,500	좌동
⑬ 치수절단술(치아당 보상)	7,000	좌동
⑭ 만기환급금 ^{주)}	600,000	1,000,000

주) 만기환급금: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상기 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.

6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
7. 배당에 관한 사항 : “배당을 지급하지 아니함”
8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9. 갱신탁약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0.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1.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 -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+ 1% 범위 내에서 적용함.
12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 -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,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.
13.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4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5.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
 -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“평균공시이율 + 1.5%”로 함
16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: “해당사항 없음”
17. 보험가입금액 제한에 관한 사항
 - 기본계약(치아치료보장(치아관련 13개 담보 보장) 및 만기환급금)의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고정으로 운영함
18.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
 - 가.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 되는 경우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.
 - 1)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
 - 2)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
 - 3)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
 - 4)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
 - 나.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변경된 보장내용을 적용함.
 - 다. 회사는 가.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취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, 보험료 수준,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.
 - 라. 가.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,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(또는 반환받을)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.

